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53 발의연월일: 2020. 7. 7.

발 의 자:김승남·김민철·황운하

인재근 • 윤재갑 • 민형배

서동용 • 박성준 • 조오섭

위성곤 · 주철현 · 맹성규

김회재 · 홍성국 · 윤미향

최종윤 의원(16인)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제법 도입 논의는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주민세의 10%를 '고향납세'의 이름으로 고향으로 보내어,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했음.

그러나 거주지와 기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조세원칙에 어긋난다 는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제도 도입이 지연됐음.

이런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 피해는 축적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까지 겹쳐지면서, 도시와 농촌 간격차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 이는 지방재정자립도 악화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지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전개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자발적 의사를 가진 개인과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를 가능하게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 참여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경우 1차적으로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고, 나아가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소비했던 기부자가 다시 지역 생산자의 특산품을 주문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도 기대할 수 있음.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 범위, 사용 분 야, 답례품 제공 여부와 한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자립도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1조)
- 나.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하는 개인은 출생지, 과거 일정 기간 거주한 곳을 포함해 현재 거주하는 곳이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음.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하는 법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기부할 수 있음(안 제4조)
- 다.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라 세 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안 제4조의1)
- 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농축수산 특산물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답례품의 최고 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함(안 제8조)
- 마.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부금의 사용 분야는 해당 지자체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만 사용해야 함(안 제9조)

- 바.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현황과 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
- 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와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5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 및 법인의 기부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및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고향사랑 기부금"(이하 "기부금"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개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재지가 아닌 곳에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하 "모금"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개인이나 법인에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부금 모금 주체 및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주민이 아닌 개인과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

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제4조의1(기부자 세액공제) 기부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라 당해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제5조(기부·모금 강요의 금지)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매체, 정보통신망 (제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안내책자·인쇄물의 배부, 그 밖의 적합한 방법으로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
 - 1.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 2. 호별 방문
 - 3.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 권유·독려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의 모금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기부금의 접수) ①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 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

- 제, 신용카드 또는 자금이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 제8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 (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 된 물품
 -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현금
 -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 3. 제2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기부

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 보호
- 2. 지역 주민들의 문화 · 예술 · 보건 등의 증진
-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업무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전 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 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 야 한다.
- 제12조(불법기부금의 반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1. 제4조를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경우
 - 2. 제5조를 위반하여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한 경우
 - 3. 제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 금한 경우
 - 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 제13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